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94 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 김선교·김성원·김소희

송석준 • 박덕흠 • 정동만

김상훈 • 이헌승 • 서천호

신성범 · 이양수 · 박준태

김승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 및 개량, 대중 교통체계의 확충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, 2020년 기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전국 행정리(行政理)의 73.5%에 달하여 농어촌 지역의 '식품 사막화'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
또한 전통시장의 수요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상권이 미약한 농어촌에서는 그 사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식품 소매점 및 도매

시장·소매시장 등 확충 사업을 추가하고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및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, 식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도매 시장·소매시장 등의 확충

제5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0조의2(농어촌 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) ① 「농업 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 또는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이 농어촌지역(읍·면 지역에 한정한다)에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장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가맹점(이하 "가맹점"이라 한다)으로 등록할 수 있다.
 - 1. 조합의 조합원(이하 "조합원"이라 한다)이 생산한 농산물,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장
 - 2. 농약, 비료, 사료, 어망 등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판매하는 사업장

② 조합의 가맹점 등록, 준수사항,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의4(제2항은 제외한다), 제26조의5, 제26조의6(제1항제2호 및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) 및 제74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	제29조(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
개선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	개선) ①
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	
증진하고, 경제활동 기반을 구	
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	
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.	
<u> <신 설></u>	5의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
	3호 및 제7호에 따른 제1종
	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
	식품, 식자재 등을 판매하는
	<u>소매점 및 도매시장·소매시</u>
	<u>장 등의 확충</u>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0조의2(농어촌 지역 내 온누
	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)
	①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
	제1호 또는 「수산업협동조합
	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
	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이 농어
	촌지역(읍•면 지역에 한정한
	다)에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다
	음 각 호에 따른 사업장은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가맹점(이하 "가맹점"이라 한다)으로 등록할 수있다.

- 1. 조합의 조합원(이하 "조합 원"이라 한다)이 생산한 농산 물,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 장
- 2. 농약, 비료, 사료, 어망 등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판매하는 사업장② 조합의 가맹점 등록, 준수사항,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의4(제2항은 제외한다), 제26조의 및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) 및 제74조를 준용한다.